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- 233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17호, 2024.10.28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4년 11월 18일

보건복지부장관
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(치과항목 발취)

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편 제3부 제10장 제4절 치주질환 수술 초-114 치아 외과적 정출술 [1치당]란 다음에 초-115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분류번호	코드	분 류
초-115	UZ115	제4절 치주질환 수술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 Gingival Soft Tissue Augmentation using a Cross-Linked Volume-Stable Collagen Matrix

부 칙

이 고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1편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중 파-1 전혈 및 파-2 혈액성분제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(치과항목 발췌)

현 행	개 정
제1편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·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10장 치과 처치·수술료 제4절 치주질환 수술 <신설> <신설>	제1편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·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10장 치과 처치·수술료 제4절 치주질환 수술 <u>초-115</u> <u>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</u> <u>UZ115</u> <u>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</u> <u>증대술 Gingival Soft Tissue</u> <u>Augmentation using a</u> <u>Cross-Linked Volume-Stable</u> <u>Collagen Matrix</u>